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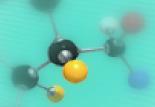
특허조사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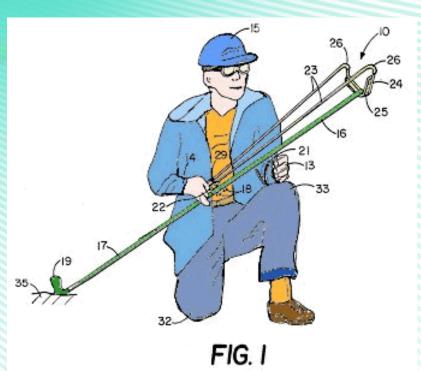
- I. 발명과 특허
- I. 특허분쟁/소송
- L 모범명세서 및 청구범위
- I. 판결사례로 본 명세서
- 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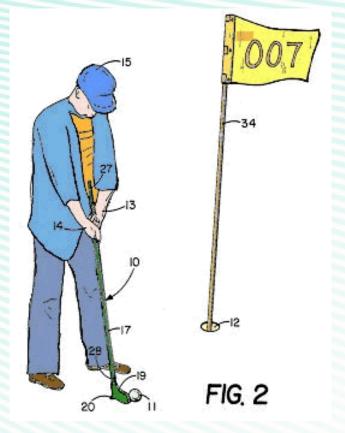
발명과 특허



atatata181816960101010101010101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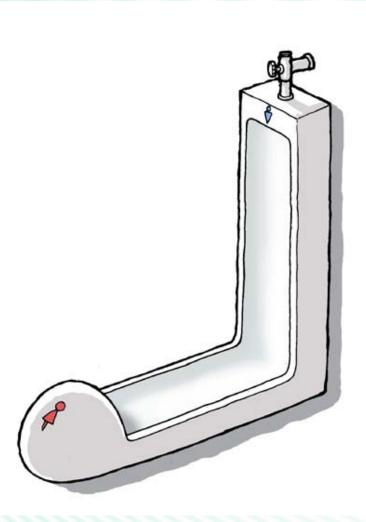






otatata1818181810101010101010101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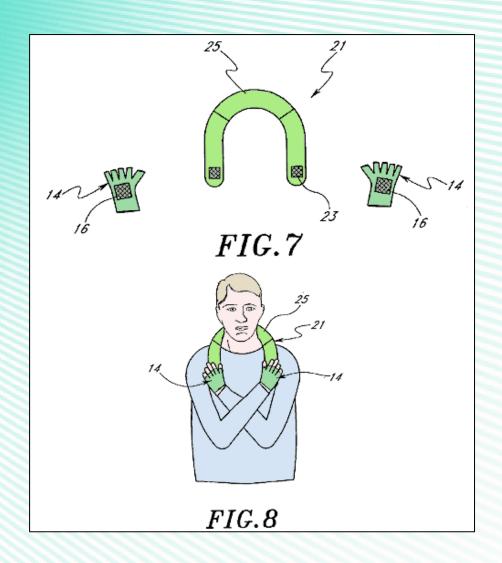






010101018/8/19/010101010101010101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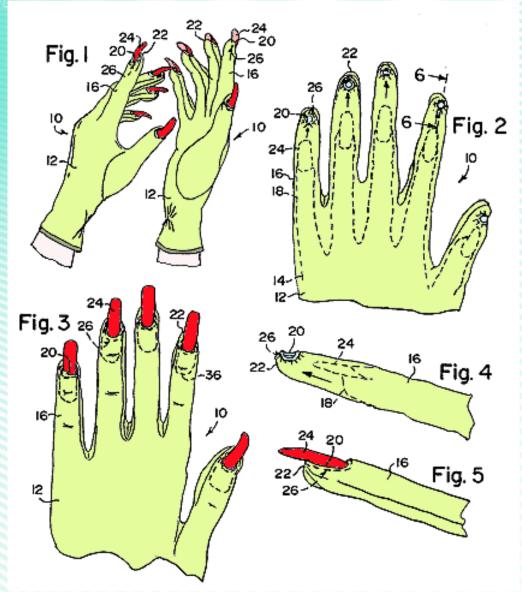






อาดาอาดาชิโซโซโซโซโซโซโซโซโซโซ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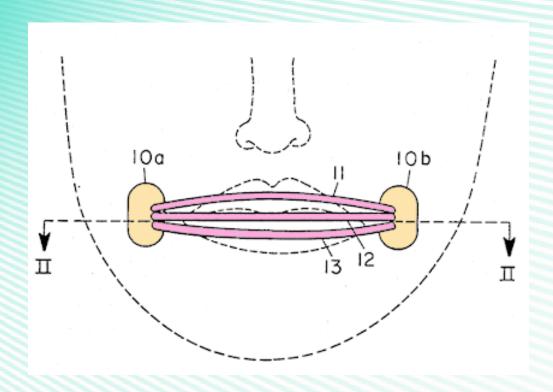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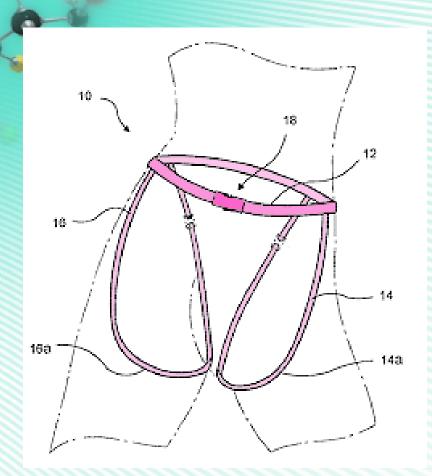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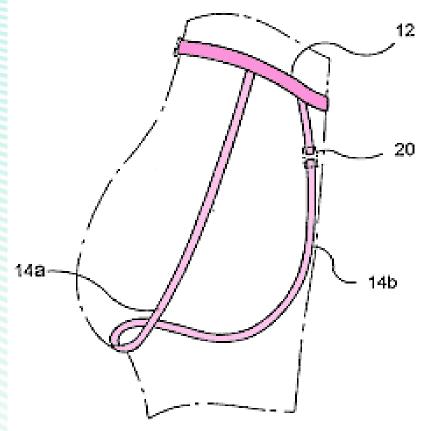
តាចចោតមើម៉ែម៉ែម៉ី (១១១១១១១១១១១១១១













원천기술 특허 황금알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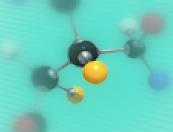




삼성 LG 특허경영 올인









기술로 번 돈, 로열티로 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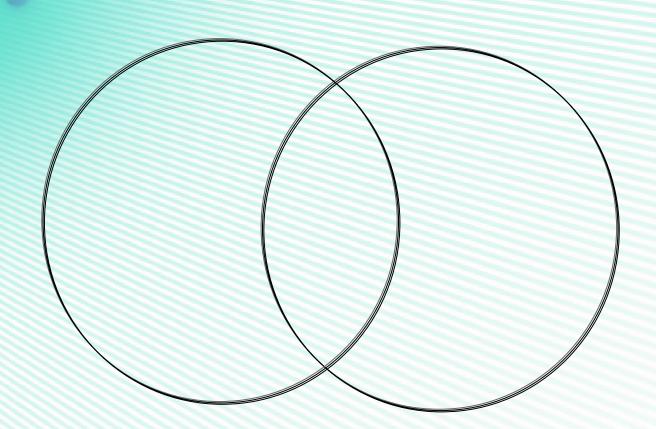


"으이구~ 이 특허괴물들…"

특허분쟁/소송



특어권과 침해여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분쟁 - 침해소송

- 특허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결과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가령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여부를 다투는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를 다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그 예이다.
- <u>특허침해소송</u>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기술을 몰래 도용하여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기술의 도용(盜用) 등으로 특허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당할 경우, 특허권자가 그 제3자에게 더 이상의 특허침해를 못하게 하거나, 침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여주는,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특허제도 전체의 成敗와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 그런데 문제는 현재 특허심판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있으나, 특허침해소송은 제2 심(항소심)을 아직도 (일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특허법원이 관할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분쟁사례1: 기저귀 전쟁



LG생활건강, '기저귀소송'에서 유한킴벌리에 승소





분쟁사례2: SKC, 롬앤하스와 CMP패드 특허



CMP 패드 특허소송 2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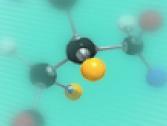




'이기고도 진' 소송, 겪어보셨다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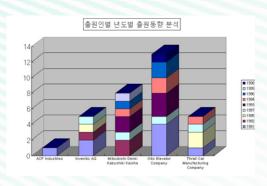






특허보호전략

-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체제 구축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내 인식 제고
 -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요원 양성
 - 자사의 특허기술분석, 경쟁기업의 특허활동 감시(경쟁사의 특허등록을 저지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 미래의 분쟁가능성 대비, 연구개발 의 방향 제시 등
- 기술개발활동의 촉진과 적극적인 권리화
- · 특허정보의 적절한 활용, 특허맵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63(6/20)



법정

| | 판사 | 재판장 | 판사 | |
|--------|--------|-------|-------|-----------------------|
| 원고 | 사무관(주사 |) 기록 | M21 | 피고 |
| 4 변화사석 | | | 증인석 | 고 변 호 사 석 |
| 석 | 원고 변론 | 석 피 | 고 변론석 | 석 |
| | | | | |
| | | 방 청 석 | | |



010101010191

[기본내역] [중요사건]



| 사건번호 | 2006고합463 | 대표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동명판결검색 |
|--------|--------------|---------|--|
| 피고인명 | 황우석 | 검사 | 홍만표 |
| 재판부 | 제26형사부 나 | | |
| 접수일 | 2006, 05, 12 | 종국일 | |
| 형제번호 | 2005형제136652 | 인계일 | |
| 판결문도달일 | | 기록송부일 | |
| 기록반환일 | | 기록영수일 | |
| 확정일 | | 검찰등본송부일 | |
| 상소제기내역 | | | |

[최근기일정보] 상세조회

| 일 자 | 사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 과 |
|--------------|-------|------|------------|-----|
| 2006, 06, 20 | 14:00 | 공판기일 | 서관 제417호법정 | 속행 |
| 2006, 07, 04 | 10:00 | 공판기일 | 서관 제417호법정 | |

[최근 문건접수내역] 상세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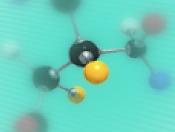
| 일 자 | 내용 |
|--------------|-------------------|
| 2006, 06, 20 | 변호인 박종록 변호인선임계 제출 |

[피고인죄명내역]

| | 10 11 | 50 |
|----|---------------------------------------|----|
| 번호 | 피 고 인 죄 명 | |
|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동명판결검색 | |
| 2 | 업무상횡령 🕩동명판결검색 | |
| 3 | 사기 ②동명판결검색 | l |
| 6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동명판결검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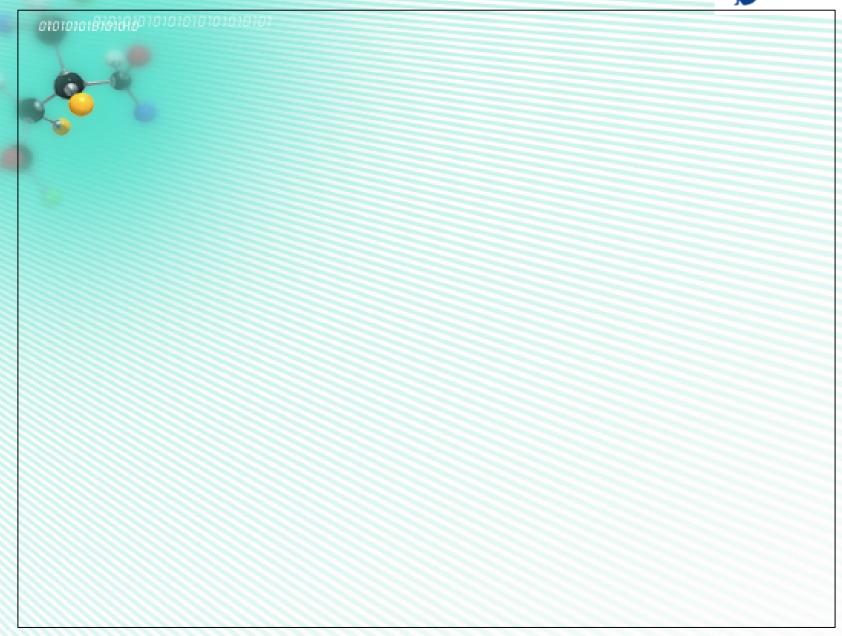






檢 "희대의 학문적 사기" vs 辯 "여론몰이식 비판"









원고 와 피고 - 발명의 특정







공격과 방어



주장책임/입증책임

- 주장책임: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변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 주장책임의 분배: 주장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일치하므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권리에 장애가 있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근거규정은 피고가 주장하여야 합니다.
- 입증책임: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주장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즉,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도 요증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누구를 패소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증책임 부담자는 진위불명의 경우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관계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동일한 문제의 양면으로 서로 대응하는 개념 으로서 주장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변론주의의 결과 법원이 증인의 증언이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 요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입증과정에서 유리한 사실이 들어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 입으로만 외치는 주장은 필요없다



법과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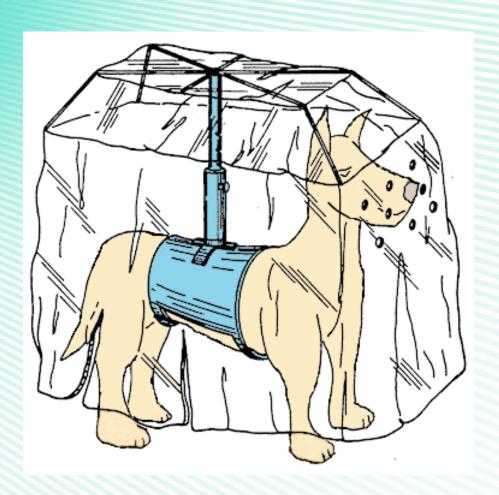






otatatat#18/10/10/10/10/10/10/10/10/1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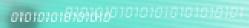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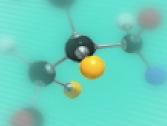


특허청, 출원시 유의점 10가지 소개

- 1. 제품출시나 논문발표보다 특허출원이 우선
- 2. 의료행위발명은 특허대상이 아니다
- 3. 특허출원전에 선행기술검색은 필수
- 4. 공동발명은 출원전 권리관계를 명확히
- 5. 출원명세서를 충실히 기재하라
- 6.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 7. 외국에서 특허를 향유하려면 외국에도 출원하라
- 8. 해외출원에도 기한이 있다
- 9. 정부지원을 적극 활용하라
- 10. 특허출원시 상표출원도 함께 고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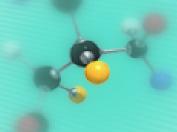














명세서

- 명세서의 의의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당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 1. 기술적 내용이 명확하고도 충분히 기재되어야 함 과 동시에
 - 2. 출원인이 특허받으려고 하는 권리가 어떠한 범위 인가를 제3자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 재되어야 한다.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보호받고자하는 사항의 실체, 즉 발명의 요지는 특허청구범위만에 기초해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는 통상 발명이 응축되어 기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재만으로는 발명의 본질이 이해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다의적(多義的)인 용어나 조어(造語) 또는 통상의 의미와는 의미가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이들의 설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를 참작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출원인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어떠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가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미완성 발명(발명의 성립성)

- 미완성발명은 일단 발명다운 외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발명으로서 구체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미완성 발명의 유형으로는, ① 단순한 착상의 제시에 그치고 이것에 대한 해결수단이 없는 것, ② 해결수단은 제시되어 있지만 극히 막연한 제안에 불과한 것, ③ 제시된 해결수단만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등등
- 미완성발명의 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행 법제 하에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발명이 기술적으로 완성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명세서의 기술내용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서면주의

- 서면주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중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구두에 의한 설명, 현물(발명품, 모형, 견본 등)의 제출로 서면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또는 이미 제출한 서면의 기재불비를 보충할 수는 없다.
- 예를 들어, 미완성 발명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서면상 미완성이라는 뜻이지, 출원인이 현실로 발명을 완성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출원당시 이미 발명이 완성되어 있음을 현물로 입증해도 안 된다.
- 출원시에 발명의 핵심을 은폐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출원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되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완성된 발명이더라도 개시가 불충분하다면 미완성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명세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라면 참조 되겠지만 발명의 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인 경우에는 참조 될 수 없다.



특허법 제42조

-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출원인이 자기의 권리로서 무엇을 청구하는가를 자기의 책임하에 결정해야 하고, 그 기재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던 책임도, 초과한 구성요건을 기재한 책임도 모두 특허출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명세서에 있어 용어사용

-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77 판결에서는 압력단위를 1마력/때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압력단위는 단위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 마력단위는 힘의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개 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특허에 압력단위 1마력/때로 표시하였다면 이는 결국 특정 압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특허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명세서 작성방법 및 실제

- 발명의 명칭
 - ✓ 폴리에스테르필름의 제조방법(0)
 - ✓ 홍길동식 폴리에스테르 필름(X)
 - ✓ 발명특허 000 (X)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1] 목적
- (2)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 (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4] 구성
- (5) 실시예
- (6) 효과
- 특허청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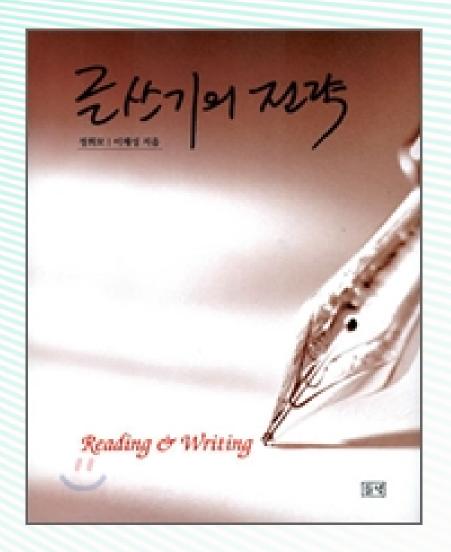
발명(고안)의 명칭: 밥솥

- 목조
 - ✓ 쌀로 밥을 하는 위함이다
- 종래기술
 - ✓ 지금까지는 생쌀을 그냥 먹었다
-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 ✓ 가열을 견딜 수 있는 용기(그릇)이 필요하다
- 구성
 - ✓ 쇠를 이용하여 담을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다
- - ✓ 잘 익었어 맛있다
- 특허청구범위



글쓰기의 전략[기본원칙]

- 명세서는 출원의 심사심판을 위한 대상 발명의 파악에 사용되며, 다 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관 에 의하여 해석되어 진다. <u>따라서</u> 발명의 해당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는 기대되지 않는 재판관이 당해 발명의 가치 및 독점권으로서의 보 호범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문장의 구성은 간결 명료하게 할것
- 표현내용은 논리적으로 할 것
- 기술내용을 상세하게 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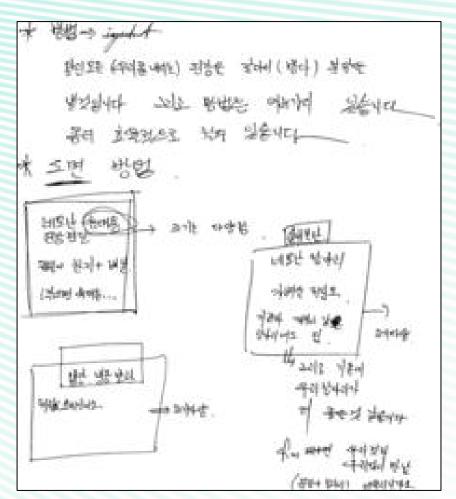




서울중앙지방법원

발명의 명칭: 토종분말된장과 매실에 만남

정구항 1항. 내 것인 토종분말된장 과 매실에 만남인 도면, 요약서, 명 세서, 출원서에 기록된 글들과 만 드는 방법등을 표절하거나 카피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모두를 행 했을 경우엔 인권침해 행위이기 때 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것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과 형 사상에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또 편집이 되는 이 시간부터도 침해하지 마십 시요 심사관님께 도면을 보시고 다 시 청구해야 할것과 기타 서면 자 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발명의 명칭] 된장수

- 본 제품은 여름이나 운동후 땀을 많이 흘린 후에나 갈증해소에 좋으며 남녀노소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요소들로 구성해 만들어졌으며, 영양 상 어떤 음료수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토속적인 음료수 로 각광을 받고자 함.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매주의 신비성을 된 장음료수로 세계에 보급하고자 함
- 청구항 1. 기존의 음료수는 당도가 높고 화학적인 음료수가 많은 반면 본 제품은 순수자연식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음료수이며 외식입맛에 길들여진 요즘. 그 점에 변화를 주고 건강상 유익한 점을 들어 고안했음.



[발명의 명칭] 생맥주 피처용기 제조 방법 및 그 피처 용기

• 청구항 1. PET 병의 원료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진, ABS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중 어느 하나의 수지재로 이루어지고 인서트 인젝션(INJECTION)설비의 스크류내에 투입하고 히터를 이용하여 녹인 후 피처의 손잡이와 몸체를 사출하여 프리폼(PREFORM)을 성형하는 공정과; 상기 성형된 피처(pitcher) 프리폼을 히터로 재가열하는 공정과; 상기 히터로 재가열된 프리폼을 일정한 형상을 갖는 형틀(금형) 내에 넣고 연신봉과 에어로 블로우(BLOW)시켜 피처 몸체를 성형하는 공정과 상기 성형된 피처를 검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제조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생맥주용 피처용기 제조 방법 및 그 피처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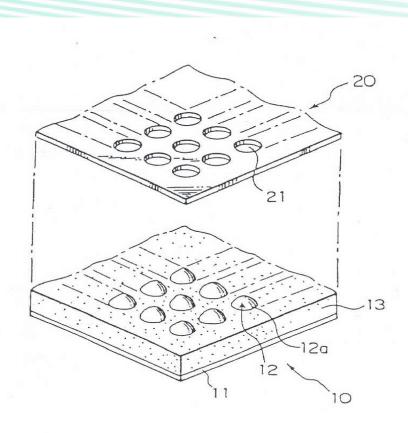


| (- <u>-</u> | | |
|----------------|-----------|---------------------------------------|
| | 0.00 | 발명내용의 파악 |
| 초 | I 단계 | 발명자의 발명에 대하여 목적, 구성, 효과, 실시방법, 대략적인 구 |
| | | 성도면 별로 노트한다. |
| | | 관련 공자기술 조사 |
| 안 | | 특허 및 실용신안 공보, 외국 특허명세서, 학회지, 기술관련 잡지 |
| 1557-265 Ye | | 등의 기술문헌을 조사한다. |
| 단 | 825357C18 | 받명과 공지기술 대비 |
| 100 | Ⅲ단계 | 발명과 공지기술을 대비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확인한다. |
| 계 | | |
| | IV단계 | 특허성 분석 |
| | | 진보성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조립 |
| | | 한다. |
| | ¥단계 | 경구범위 |
| | | 권리문서의 역할을 하므로 특히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에 유의하 |
| 명 | | 여 작성한다. |
| 세 | VI단계 | 발명의 명칭 |
| | | 청구범위의 종결부를 일반적으로 채택한다. |
| 서 | | |
| | | 도면과 도면의 간단한설명 |
| 단 | | 초안 데이터와 청구범위를 토대로 최적의 작성 도면을 작성한다. |
| 계 | | |
| 711 | | 상세한 설명 |
| | ₩단계 | 기술문헌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항을 구체적 |
| | | 으로 기재한다. |



오염방지용 탄성부재가 설치된 면 파스너

- 발명의 명칭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 종래기술의 문헌정보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 야의 종래기술
-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 발명의 구성과 작용
- 발명의 효과
-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의 성격

- 출원인이 특허권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요망하는 범위
- 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

- 특허청구범위는 독점권을 설정해주는 핵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 소유자와 일반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이지대하다. 즉, 발명내용 이상의 권리범위를 설정해주면 일반 공중이불측의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발명내용을 너무 축소하여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발명자의 발명의욕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 특허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의한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의 운영취지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특허제도 시초부터 특허청구범위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특허권의 침해에의 합리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현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이다.
- 특허청구범위는 앞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권리의 효력의 범위가 좌우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침해여부)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라 함은 특허발명이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 는 범위를 의미한다.
- 특허법 제97조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여 새로운 발명으로서 특허받을 만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고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개의 구성요건이 기재되었을 경우 이들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1 클레임 1 권리의원칙' 또는 '권리일체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이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항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그 여러 개의항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권리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청구항마다 권리가 인정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발명의 카테고리

-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i) 물의 발명, ii) 방법의 발명, iii)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특허법 제2조 3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대상에 따른 구별이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인 구성의 형식에 따른 구분이다.
- 물의 발명은 다시 i) 기계 기구 장치 등의 발명과, ii) 물질의 발명, iii)
 조성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분류된다. 방법의 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시계열적인 처리과정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물의 발명과 구분된다.
- 관행상 특허법상 발명의 카테고리는 위의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명은 그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표현형식에 따라서 분류된다. 즉 발명의 카테고리 의 결정은 발명의 대상의 특징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기재방법의 일반적인 사항1

-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은 다항제에서는 독립항과 이 독립항을 인용한 1 또는 2 이상의 종속항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형태를 1 또는 복수개 기재하는 것이다. 단항제 형태로 독립항 1항만 기재하든 또는다항으로 기재하는 출원인의 선택은 자유롭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재방법은 역시 발명내용을 최대한의 권리로 할 수 있도록 다항으로기재하는 것이다.
- 예로 구성요건의 하나인 [Y]가 [X]와 [Z]에 상호 연결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장치(톱니바퀴, 벨트, 체인 등)라 할 때 이 구성요건 [Y]의 기술적 영역을 최대한 넓힌다는 의미는 회전력을 전달하는 구체적 인 수단인 톱니바퀴 또는 벨트나 체인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 라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 즉 "동력전달장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방법의 일반적인 사항2

- 여기서 "구성요건"이란 발명의 구성을 이루는 개개의 독립된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전자회로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회로 전체를 이루는 각각의 부품(소자) 하나하나가 구성요건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회로 내에서 특정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소자끼리 묶어질 때(블록) 그 묶음 하나하나가 구성요건이 된다. 즉 구성요건의 상호 결합을 했을 때에 발명의 전체구성이완성된다.
-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상기의 각 구성요소들은 그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유기적 혹은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의 구성요소가 상호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 결합(주합 또는 집합이라고 한다)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소위 유기적인 결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육지와 섬 처럼 하나 또는 복수개의 구성요소가 결합되지 않고(특성상 결합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떨어져서 구성요소가 나열식으로 기재된 경우도 역시 유기적이라거나 논리적인 결합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기적 결합이라는 것은 결합되는 구성요소간에 상호 작용이 있는 소위 특허성 있는 결합을 의미한다.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

- [1] 내용기술형: 일반적인 기재방식으로 필수구성요건을 시간적 경과 혹은 위치적 관계에 따라 차례로 기재하는 형식
- (2) 요건열기형 : 내용기술형에 조금 연구를 가하여 각 공정구분 또는 기계요소로서 정리해 가는 형식
- (3) 특징추출형 : 개량발명, 전제부에 선행기술의 구성을 나타내고 특징부분에 그 발명의 특징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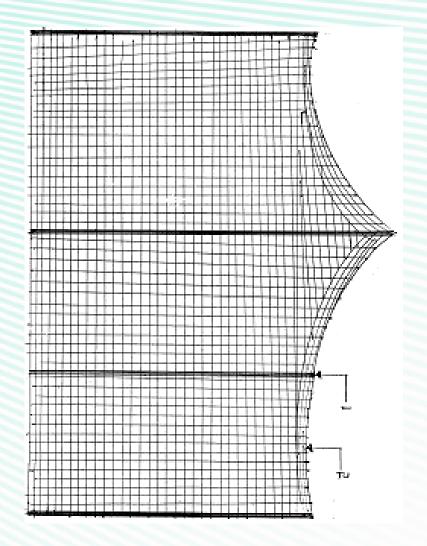
특허청구범위의 기재형식

- 특허청구범위(다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항을 말한다)는 일반적으로 단일의 문장으로 기재하고 전제부, 특징부, 연결부, 종결부 순의 기재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접슨형태의 청구항(Jepson type Claim)을 사용하는 발명은 오로지 종래 기술을 바탕으로 그 부분적인 개량에 특징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지된(혹은 주지된) 구성부분을 청구항의 전문에 기재하고, 그 공지된 기술에 대하여 그 발명이 특징으로 하는 개량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형식으로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전형적인 예를 들면, A와 B가 공지이고 C가 신규사항으로 부가된 것을 때, "A+B로 구성된 ...장치에 있어서, C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또는 A와 B와 C가 공지이고 C'이 개량사항일 때, "A+B+C로 구성된 ...장치에 있어서, 상기 C는 C'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이다.



사라져간 참새구이를 먹을 수 있는 방법

-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본 방법과 같이 참새를 사육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우 선권의 청구이며 법적으로 되엇을 시 우선권에 관한 청구이다.



편광판용 점착제 및 이를 이용한 편광판

-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편광판에 적용되는 점착제에 있어서,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X1 = X(F1) = 40 \mu m \sim 150 \mu m$

 $X2 = X(F2) = 400 \mu m \sim 1000 \mu m$

(F는 하중, X는 점착제가 부착된 편광판을 접착 면적 1cm×1cm로 유리판에 부착 후 실온(25℃)에서 각각의 하중(F)을 1000초 동안 걸었을 경우 점착제의 밀린 거리이며, F1=100~500gf, F2=600~1200gf에서 선택되는 값이다)

-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제가 (메타)아크릴산 에스테르 단량체 75 내지 99.89중량% 및 관능성 단량체 0.01 내지 20중량%로 이루어지는 아크릴계 공중합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 청구항 4. 점착제가 적용된 점착편광판에 있어서, 제 1 항의 점착제가 적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편광판.



특허명세서 작성 장치 및 방법

- ·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1.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장치에 다수의 대표적인 유형중 해당되는 하나의 발명 유형과 발명에의 구체적인 검색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발명 관련 사항 선택부; 표적인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표준화시킨 명세서 폼 데이터, 선택부; 발명 예시 명세서 전문 데이터, 상기 예시 명세서 전문 중에서 각 명세서 내용 데이터, 기존 명세서 전문 데이터 는 데이터 저장부; 및 상기 데이터 저장부의 데이터들로부터, 상기 발명 선택부에서의 선택에 의해, 명세서 작성에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명세서 일을 생성하는 명세서 작성용 파일 생성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명세서 작성용 파일은, 상기 발명 관련 사항 선택부에서 하나의 발명 유형을 선택하는 것 에 의해, 해당되는 하나의 명세서 폼, 하나 이상의 해당 예시 명세서 전문 및 상기 명세서 항목별 내용을 추출하여, 상기 서 항목별 내용을 상기 명세서 폼내의 각 항목별로 부가시키면서 명세서 전문을 첨부하여 생성시키는 명세서 작성의 자료와, 상기 발명 관련 사항 선택부에서 발명에 관련된 구체적인 검색어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기존 명세서 전문을 추출하여 생성시키는 명세서 작성의 구체적 참고 자료를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서, 발명자가 컴퓨터에서 상 서 작성용 파일을 참고하면서 간편하고 용이하게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 명세서 작성 장치 70



재털이

· 청구항 1. 재털이의 형상과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연기가 나고 있는 담배의 불을 자동적으로 끄는 재떨이



고분자 조성물

- 청구항 1. 고분자 엘라스토머에, 그 유리전이점 Tg 전후에서 가역전으로 색조가 변화하는 발색성 화합물을 혼입시켜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자 엘라스토머 조성물.
- 청구항 1. 나일론 95~40중량부, 폴리프로필렌 5~60중량부, 및 일반식(I)의 폴리에틸렌계 아이오노머 0.1~20중량부로 이루어진 나일론계고강도 다성분 고분자 조성물.

<u>서울중앙</u>지방법원

[발명의 명칭] 악행을 선행으로 전환 활용하므로 법의 보호와 권장하에 행할 사기방법

- 청구항 1. 능력있는 입후보자나 사업가등이 본래 성취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유권자 장래고객이 될 생산자와 상품 소비자를 유인할 미끼로써 중요정보제공 및 고충·난제 해결책, 유료 또는 무료 강좌를 여는 속이기 방법이나 약속한 정보제공과 고충과 난 제해결책을 명쾌히 제시 했다면 목적이 어디에 있던 법적인 하자가 없고 오히려 유권자나 장래 고객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음으로써 무일푼으로도 입후보자는 정치자금 확보와 함께 당선의 영광을 얻고 역량있는 사업가는 무일푼으로도 생산자 거래선과 소비고객을 동시에 확보 할수 있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 청구항 3. 독학으로 없었던 학설, 이론, 원리, 법칙, 진리를 완성했으나 학력, 경력 등의 조건때문에 인정받지 못해 연구 결과가 사장될 위기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은사 또는 유명인사의 이름을 인용 그 분이 오랬동안 연구하다 마무리 짓지못하고 그 분이 가르쳐준 방법에 의하여 못다한 마무리 작업을 완성한 것이라 속이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속여 발표하므로써 그 분야의 학자들이 정설인지 연구하게 되고 정설로 인정될 경우 새 학설이 정착되고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학설이나 법칙, 진리 등으로 인하여 사회악이 되어온 원리와 그를 이용해온 악의 집단만 치명타를 입을 뿐 이름을 도용당한 분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며 그 원리 법칙과 진리는 온인류가혜택을 입게되는 방법.
- 청구항 4. 기타 악행으로 이용되어온 모든 사기 방법을 선행으로 활용하는 사기 방법

〈내마모성이 향상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가교제 및 광개시제 존재하, 자외선 조사에 의한 광중합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수백 μm 깊이까지 가교된 내마모성이 향상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청구항 2. 가교제로서 이관능성 이상의 비닐 단량체와 광개시제와의 혼합물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첨가한 다음 상은 내지 120℃의 온도범위에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자외선을 조사하여 광중합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제 1항에 따른 내마모성이 향상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제조방법.
- 청구항 12.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으로 부터 제조된 성형품.
- ·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인공관절 또는 마찰, 마모 운동을 받 는 기계 부품인 것이 특징인 성형품.

〈경피흡수제 및 이를 함유한 외용제 조성물〉

-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1nm 내지 500nm의 입자크기를 갖는 고분자(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생리활성성분을 포집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피흡수제.
- · 청구항 2. 제 1항에서 있어서, 상기 고분자의 입자크기가 30nm 내 지 15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흡수제.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리활성성분은 항생제, 항종양제, 항염증제, 해열제, 진통제, 항부종제, 진해 거담제, 진정제, 근육이완 제, 항간질제, 항궤양제, 항우울제, 항알레르기제, 강심제, 항부정맥 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당뇨치료제, 항상성제, 호르몬제, 항산 화제, 육모제, 양모제, 잇몸질환제(항균제), 미백원료, 콜라겐 합성 촉진제, 주름제거·완화제, 피부장벽강화제 및 피부보습력 증강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 종 이상임을 특징으로 하는 경피흡수제.



단백질~유도체

약학적으로 허용기 알리사이클릭, 하이 R2는 수소, 알로, 일 식에서, R1은 수소, , -NR9R10 및 -들록시, 알콕시, 시 別が記れ 기로 중 에네로아르알킬이다)로 기고; 2는 아릴, 에테로아릴, 에테로시 이거나; 또는 R15와 R16은 이들에 1이고; R6은 수소 및 알킬로 이루어 루어진 군에서 선택되고; R8은 아이 독립적으로 순소, 알킬, 시아노알킬, = R9와 R10은 함께 헤테로사이클로 기알킬 및 아릴로 이루어진 군에서 산 네테로사이클로아미노를 형성하고; 군에서 선택된다. 이이열지드 ! R5는 R16은 I로사이 아릴, (진, 군0 하고록? 에 비로이 에서 선택 서진 로에 역으로 수 이어 있는 및 에테 고실, 아릴, 진 군(이루 목립 결합 [드록 루어 릴로 13은 들에 , 아이 아 R 이릴 길 원 릴 , 니항무 R17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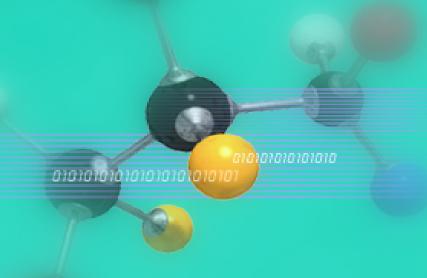
초코릿 제조



삼각김밥



판결사례로 본 특허명세서





특허법원 2005허1684

-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2001. 12. 27. 선고 99후1973 판결, 1989. 3. 28. 선고 85후109 판결, 1983. 1. 18. 선고 82후36 판결 등).
-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권리범위를 인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에 관하여 본다.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 발명의 명칭: PVC 타일용 수성아크릴계 접착제 조성물
- 청구항 1. 유리전이온도가 -40°C 이하의 호모폴리머를 가지는 메타 아크릴 또는 비닐모노모 40~95중량%와, 유리전이온도가 0°C 이상 에 있는 호모폴리머를 가지는 메타아크릴 또는 비닐모노모 2~50 중량%와, 적어도 1종의 카르복실 메타 아크릴 호모폴리머 1.0~5.0 중량%와, 1~20몰 에틸렌 옥사이드로 에틸화된 메타 아크릴 모노 모 1.0~3.0중량% 및 설포네이트기를 가지는 아크릴 또는 비닐 모 노모 1.0~2.0중량%를 유화 중합한 아크릴 에멀젼 수지 100중량부; 폴리카르복실산 소다염 0.2~1.0중량부; 유기질소유황할로겐계 복 합제 0.2~1.0중량부; 탄산칼슘 40.0~56.0중량부; 점착부여제 17.0~30.0중량부; 및 저온 접착강화제 3.0 ~11.0중량부로 이루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PVC 타일용 수성 아크릴계 접착제 조성물.



결론: 항상 기초, 기본이 중요



명세서 작성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기술이 아<u>프면 법원에 간다</u>





명세서 해석

